

지역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

* 예)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,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

□ 지원대상

- (규모) 100인 미만 사업장(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)
- (업종) 특별고용지원업종(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)을 우선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업종까지 지원

* (지원 제외 업종) 단란주점업,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

□ 지원요건

- (사업장 요건)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 단계 (‘20.2.23.)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
- (근로자 요건)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 단계 (‘20.2.23.)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

* (제외 대상자) 사업주의 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

*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

□ 지원내용

- 일 2.5만원, 월 최대 50만원 지원 / 2개월간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0. 4. 1. ~ 8. 10.
- 신청장소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제출서류 : 사업지원신청서, 무급휴직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자보험자격이력내역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협약서, 근로자명의 통장사본, 월급명세서

※ 문의 :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담당 (☎061-390-7467)